Grant Thornton

신규 법규 및 주요 세금 정책 업데이트

April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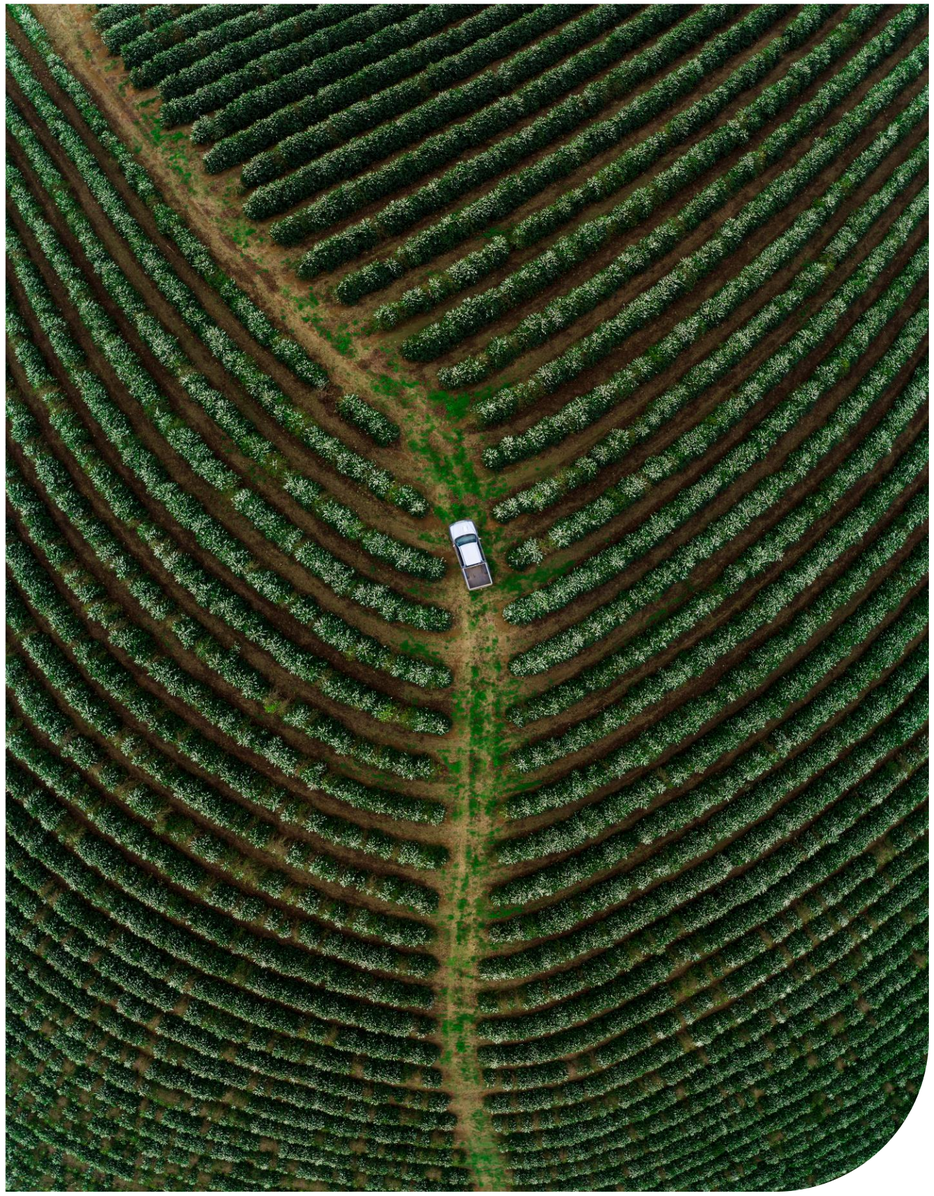

Content

이번 뉴스레터에서 고객 여러분께 관련 세무 가이드라인 및 정책에 대해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제1지역 세무서 및 하위 세무서의 전자 정보 포털에 대한 회신

세무당국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한 2024년 법인세(CIT) 및 개인소득세(PIT) 정산을 위한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시행될 주요 가이드라인

2. 공문 No. 36/CCTKV.I-CNTK

개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세금 애플리케이션(eTax Mobile) 활용 최적화를 통한 개인소득세(PIT) 정산 가이드라인

3. 공문 No. 1872/BTC-TCT

베트남에 사무소를 둔 외국 거래처에 판매되는 국내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정책

4. 공문 No. 3601/TCT-CS

산업단지 내에서의 운영과 특별히 열악한 사회경제지역에서의 활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법인세(CIT) 인센티브

5. 공문 No. 216/TCT-PC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Grant Thornton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1. 제1지역 세무서 및 하위 세무서의 전자 정보 포털에 대한 회신

2025년 3월 24일 법인세(CIT) 정산과 2025년 3월 25일 개인소득세(PIT) 정산을 위한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은 세무서 및 제1지역 하위 세무서가 세무당국의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하며, 2024년도 CIT 및 PIT 정산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문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중, 향후 시행을 위한 주요 세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24일 및 25일에 세무당국 전자 정보 포털을 통해 발표된 세무서의 회신

기업이 손실을 발생시켰으나 이후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해당 손실을 계속 이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은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2024년도 개인소득세(PIT) 정산 신고서를 성공적으로 제출하였고, 신고된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 식별번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HTKK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위해 반드시 HTKK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기업은 2025년 2월 25일자 세무서의 공식문서 번호 828/TCT-KK의 지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PIT)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추가 정보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1. 제1지역 세무서 및 하위 세무서의 전자 정보 포털에 대한 회신

개인 납세자는 웹사이트 canhan.gdt.gov.vn에서 부양가족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세금 등록/신고 및 세금 등록 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86/2024호에 따른 '양식 20/DK-TCT –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의 부양가족 등록 신고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만 18세가 되어 기존의 세무 코드(부양가족용 세무 코드)를 개인 세무 코드로 전환하려는 경우, 소득 지급자는 2024년 12월 23일자 제86/2024/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제5호 서식(05-DK-TCT)을 사용하여 해당 직원의 세무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10자리 세무 코드는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기 위해 베트남 내 기관에 부여되는 것으로, 기관 자체의 세무 의무와 외국 계약자의 세무 의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외국 계약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해당 세무 코드의 유효성을 종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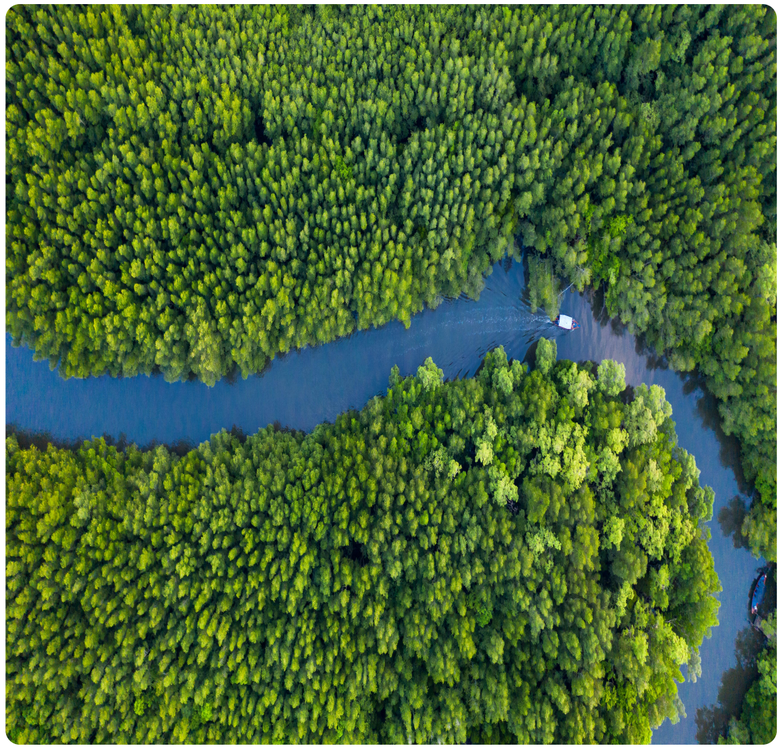

2. 공문 No. 36/CCTKV.I-CNTK

제1지역 세무서는 2024년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정산을 납세자가 원활히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전자세금 애플리케이션(eTax Mobile)의 활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Tax Mobile을 통한 사전 입력(Prefilled) PIT 정산 기능을 도입하고, 이번 과세연도에 대해 자동 PIT 환급 기능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과세연도와 비교했을 때, PIT 정산 관련 규정(정산이 필요한 경우, 위임 가능한 경우, 개인이 직접 정산해야 하는 경우, 적용 서식 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납세자가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드립니다.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2. 공문 No. 36/CCTKV.I-CNTK

공문 36/CCTKV.I-CNTK 주요 내용

1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및 개인의 개인소득세(PIT) 정산 신고서 제출 마감일은 연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 즉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접 PIT를 정산하는 개인의 경우, 마감일은 연말로부터 4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5년 5월 5일입니다.

다만, PIT 정산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개인은 해당 마감일 내에 반드시 PIT 정산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PIT 정산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0년 10월 19일자 제125/ND-CP호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납세자는 2단계로 인증된 VNeID 계정을 사용하여 eTax Mobile 및 iCanhan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으며, '세금 정산 정보 조회' 및 'PIT 정산 신고서 제안'과 같은 기능을 활용하여 소득 정보를 검토하고 시스템에서 일부 사전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PIT 정산 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안된 정보에 동의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입력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PIT 정산 및 eTax Mobile 사용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이름, 세무 코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로 소득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이 법인세(CIT) 신고를 위해 급여나 임금 비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는 개인소득세(PIT) 정산 자료와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eTax Mobile 또는 iCanhan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허위 또는 사기성 소득 신고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관련 정보를 조사 및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이는 기업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세무당국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급여·임금 지급을 신고해 법인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3. 공문 No. 1872/BTC-TCT dated 17 February 2025

- 재무부에서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로 전달

- 국내기업이 베트남에서 사무소를 둔 외국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 지정된 납품처는 제3자인 베트남 내 기업이며, 보세 창고를 통해 상품을 인도하도록 지정된 경우

상품이 해외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되어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수출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관세 구역 내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되어 해당 구역 내에서 소비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013년 재무부령 제219/2013/TT-BTC호 제9조 제1항에 따른 0% 부가가치세(VAT) 적용 대상 수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는 앞서 2024년 2월 20일 자로 여러 지역 세무서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정책과 관련된 공문 번호 558/TCT-CS를 발행한 바 있으며, 관세청도 2024년 10월 1일 자로 베트남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외국 거래처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공문 번호 4694/TCHQ-GSQL을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7일, 세무서는 여러 지역 세무서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공문 번호 6007/TCT-CS를 추가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 거래처가 베트남에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 기업(베트남 기업)에서 해당 외국 거래처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외국 거래처가 상품의 인도를 베트남 내로 지정하는 경우, 이는 내국신고 수출(On-spot export)로 간주되지 않으며, 0% VAT 세율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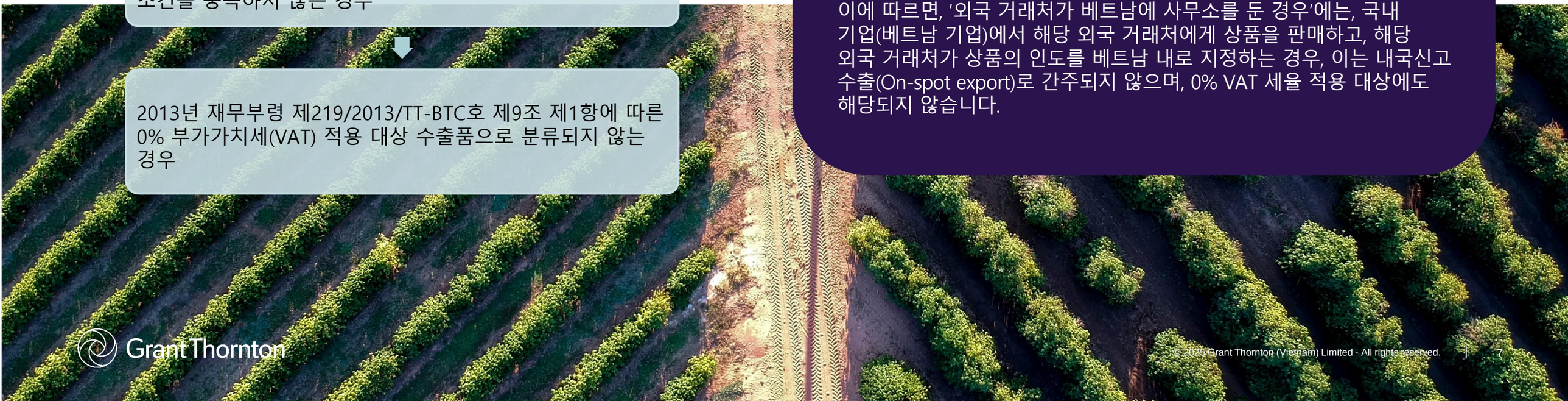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4. 공문 No. 3601/TCT-CS dated 15 August 2024

(국세청에서 Ninh Thuan Province 세무지서로 발송한 법인세 인센티브 관련 회신)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가 '특별히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단지 요건, (2) 특별히 열악한 사회경제지역 요건.

이에 따라, 매출에 대해 여러 가지 세금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인센티브 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는 앞서 2024년 6월 26일자 공문 번호 2721/TCT-CS를 빈푹성 세무지서에, 그리고 2023년 10월 19일자 공문 번호 4626/TCT-CS를 하이즈엉성 세무지서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들 공문은, 법인세 법률상 위치 기반 및 구역 기반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예: 산업단지, 단 법령상 사회경제 조건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제외)에 대해 각기 별도로 적용된다는 일관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우대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단지 내 투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려운 사회경제 지역에 따른 법인세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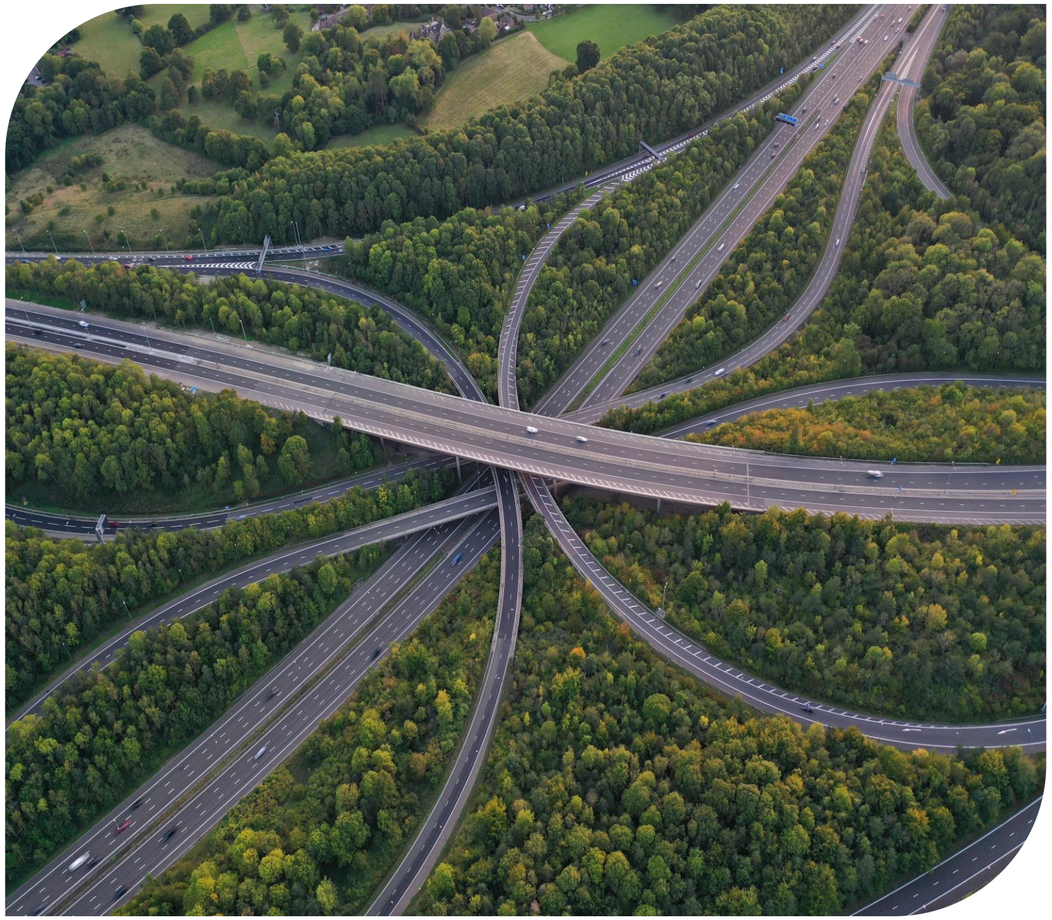

Grant Thornton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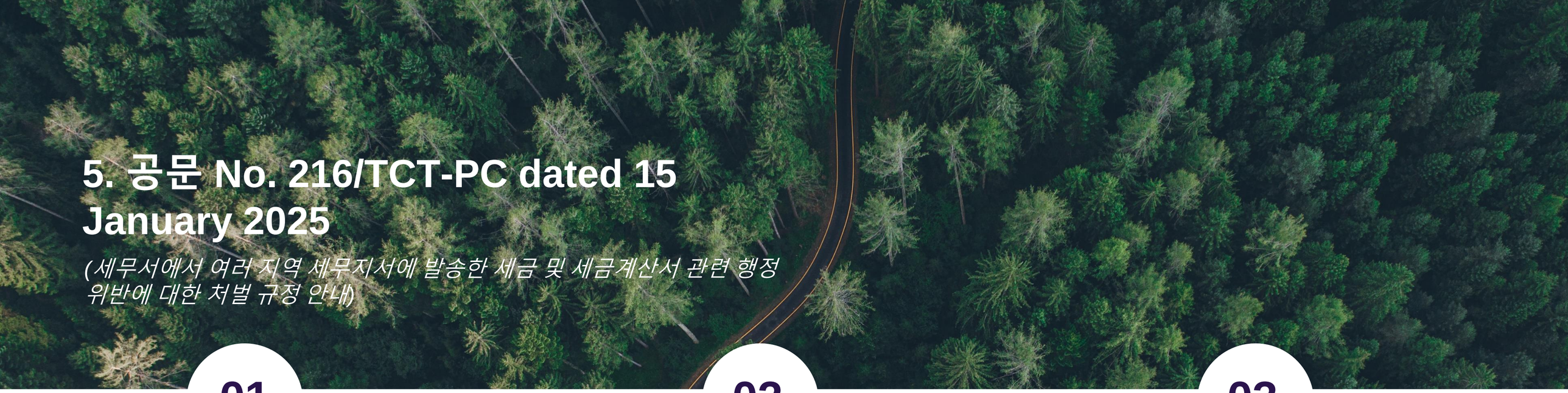

5. 공문 No. 216/TCT-PC dated 15 January 2025

(세무서에서 여러 지역 세무지서에 발송한 세금 및 세금계산서 관련 행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안내)

01

세무 절차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복수의 행정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처벌 규정에 대하여

세금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행정 위반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는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벌금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 절차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복수의 행정 위반에 대해 한 번의 단속 또는 처분에서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경우, 하나의 처분 결정서가 발급되며, 부과되는 벌금은 각 위반 행위별로 정해진 벌금의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벌금 총액은 「2012년 행정위반처리법」 제24조에 규정된 벌금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02

'대규모 행정 위반'이라는 가중 사유의 적용에 대하여

「행정위반처리법」에서는 '대규모 행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제125/2020/ND-CP호 법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규모 위반을 '10장 이상의 세금계산서가 관련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한 번의 단속 또는 처분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복수의 행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에는, 이 가중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정 위반 행위가 10장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행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03

'반복된 행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위반처리법」에서는 '반복된 행정 위반'을 가중 처벌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또는 조직이 동일한 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로서, 이전 위반에 대해 아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정 처분 시효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0년 제125/2020/ND-CP호 법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가중 및 감경 사유의 적용은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일한 행정 위반이 두 번째부터 발생하는 경우부터는 '반복된 행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 사유로 적용됩니다.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Contact

Please study the newly issued regulations and review the internal compliance procedures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customs tax as well as reduce errors in the process of filing and preparing documents that could lead to additional tax obligations or administrative penalty.
Please contact the experts of Grant Thornton Vietnam for in-depth advice if you have any inquirie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ax and customs compliance.

Please visit our **Tax Hub** to view more informatio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Hoang Khoi
Senior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Hoang Viet Dung
Tax Director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

Dang Hai Ha My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1
E my.dang@vn.gt.com

Do Vu Bao Khanh
Tax and Transfer Pricing Director
D +84 28 3910 9277
E khanh.do@vn.gt.com

© 2025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Grant Thornton